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주소:우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3층/전화:02)3271-0494/fax:02)3271-0449/담당자: 이준

문서번호 : 세가본 제296호(전도-40)	선			지	
시행일자 : 천일국 6년 천력 5월 23일 (양력 2018년 7월 6일)	결			시	
경 유 :	접	일자		결	
수 신 : 전국 지구장 및 교구·교회장	수	번호		제	
참 조 :	처	리	과	·	
	담	당	자	공	
				람	

제 목 : 신종족메시아 혼독가정교회 운영 규정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6년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완수를 통한 천일국 안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혼독가정교회’를 통한 지역복귀의 거점을 마련하여 통반격과를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신종족메시아가 혼독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취지 및 목적

- 1) ‘혼독가정교회’를 통한 천일국 국민 교육과 참가정실천운동의 통반격과활동을 활성화한다.
- 2) 준목회자 수준의 신종족메시아를 혼독가정교회 목회활동에 집중하게 한다.

나. 혼독가정교회 명칭

1) 교회소속 혼독가정교회(이하 혼독회) : 12가정 이하로 구성된 혼독회로서 지역교회에 소속된 소그룹이다. 지역교회장의 주관을 받아 지역에 사는 축복가정 3가정이 한 조가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교회 내 소그룹 조직이다. 교회소속 혼독가정교회는 ‘혼독회’로 명명하고, 혼독가정교회장은 ‘혼독회장’으로 칭한다. 또한 혼독가정교회 모임은 ‘혼독예배’ 또는 ‘혼독회’로 명명한다.

2) 교회독립 혼독가정교회 : 430가정 축복을 완료한 신종족메시아 가정은 교구 또는 교회의 발령을 받아 혼독가정교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동의 독립 혼독가정교회로서 지역교회와 같이 건물, 재정, 예배, 교육을 위한 권한을 갖는 교회이다. 교회독립 혼독가정교회는 ‘혼독가정교회’와 ‘혼독가정교회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혼독가정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은 ‘혼독예배’ 또는 ‘혼독회’로 명명한다.

다. 주요사업

- 1) 말씀을 혼독하고 교육하여 참가정의 심정문화를 생활권으로 정착시킨다.
- 2) 모든 축복가정이 신종족메시아 사명(12, 120, 430가정 종족편성완료)을 완수하도록 돕는다.
- 3) 이웃과 종족에게 참가정이상교육을 통해 축복에 이르게 하고 이를 대중화한다.
- 4) 천일국 완성을 위해 혼독가정교회를 확산하고 혼독가정교회장을 양육한다.
- 5) 혼독말씀을 실천하며 통반격과 활동(참가정, 순결, 봉사, 평화, 취미활동 등)을 통해 창조본연의 관계를 회복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한다.

라. 혼독가정교회 승인 기준

- 1) 혼독가정교회장 자격 : 신종족메시아 읍면동 책임자로서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고, 혼독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가정으로 교구장 또는 교회장이 임명한다.
- 2) 재적인원 : 직계 또는 믿음의 자녀와 종족으로 이루어진 혼독가정교회 정회원 식구 12가정을 확보하고, 매주 참여인원(성인기준)이 3가정 이상 되어야 한다. 정회원이란 소정의 원리수련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 혼독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 3) 모임장소 : 정기모임 장소는 일정한 곳에서 갖도록 권장하며, 규격이나 공간의 형태는 승인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4) 승인절차 :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교구와 지구를 거쳐서 한국본부에서 접수, 평가, 협의하여 독립 혼독가정교회로 승인하며 공문으로 알린 후 그 효력을 갖는다. 1년마다 혼독가정교회의 활동내용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 갱신한다.

마. 기타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한다.

첨부 : 신종족메시아 혼독가정교회 운영 규정. “끝”

회 장 이 기

